SEIN

NEWSLETTER914

Jan 05, 20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의 제공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 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제19조 제4항 제5호 신설)
 - □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u></u>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4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	
략할 수 있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에 따른 면제 대상
	<u>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u>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4] 사용자안내문 (제10조 관련)	[별표 4] 사용자안내문 (제10조 관련)
1. 별표 1 제11호 가목, <u>자목</u> 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1 <u>바목,</u>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u>사목 1)</u>
2. 별표 1 제11호 비고 <u>제9호</u> 를 적용한 기자재	2 <u>제2호</u>



2.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 (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Ⅲ. 시행일 등

1. 시행일

□ 고시한 날(2023.12.29.)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9조제4항제5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2.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l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붙임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문(국립전파연구원 제2023-24호 2023.12.29. 일 부 개정)

I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전혜리 관세사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